



3.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가. 선정기준

①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18세 미만 : 2020년의 경우, 2003.1.1.~2020.12.31. 사이 출생 아동

※ (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공과에 재학 중인 아동도 지원 가능함에 유의

※ 고등학교 재학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기와 상관없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예 2019년도에 고3인 학생의 재학기간은 2019.3 ~ 2020.2월말까지 임

② 지원대상(「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제1항)

급식지원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	--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참고 : 차상위계층 인정 범위

1.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경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기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0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913,740원	32,120원	7,050원	33,310원
2인	1,555,830원	52,330원	13,980원	52,630원
3인	2,012,700원	67,570원	25,530원	68,220원
4인	2,469,570원	82,470원	50,950원	83,290원
5인	2,926,440원	98,250원	82,030원	99,400원
6인	3,383,310원	113,000원	107,570원	113,980원
7인	3,842,650원	128,410원	119,410원	129,920원
8인	4,301,990원	144,300원	141,030원	146,240원
9인	4,761,330원	160,550원	160,940원	162,880원
10인	5,220,673원	174,640원	178,365원	177,420원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행복e음 입력 시 지원대상 (1)에 해당되는 아동이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로 입력

나. 지원대상 아동 선정**① 사전안내**

● 연중 안내

- 시·도 및 시·군·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관, 이·통·반장 및 지역신문, 지역 게시판, 지자체 누리집 게재 및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방학 전 안내

-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서식 6호>'를 수정하여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통보
- 각 학교는 방학 중 급식지원 필요 아동이 학교 및 읍·면·동에 빠짐없이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방학시작 전에 전교생에게 배포

* 방학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서식 6호> 및 아동급식 신청서<서식 1호>

※ 여름방학 급식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이 불필요함을 같이 안내

② 신청(추천)자 및 신청서류

● 신청(추천)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등 급식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최소화

〈제출 증빙서류(급식지원대상자 → 지자체)의 예시〉

분 류	설 명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 ※ 방문신청 시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
-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③ 급식신청(추천) 아동의 조사

● 조사내용

- 급식신청 아동, 추천받은 아동의 결식우려 여부 확인 등
- 소득조사

● 조사방법

- 읍·면·동 급식 담당자는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서식 2호>'에 따라 조사
 - * 연중 조·중·석식, 학기중 평일 조·석식, 학기중 토·공휴일 조·중·석식, 방학중 조·중·석식
- 아동 또는 보호자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하여 신청 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 요건을 조사하되, 보호자 부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통·반장 등의 협조를 통하여 조사 가능
- 긴급복지를 신청한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인 경우, 해당 아동이 아동급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같이 조사